

Deloitte.

2024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Contents

01	법인세	3 p
02	부가가치세	45 p
03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58 p
04	국제조세 / 이전가격	160 p



01 법인세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 시행령】

1.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탁소득 과세방식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①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②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과세체계 정비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① (좌 동) <삭 제> ③ (좌 동) - (좌 동) <삭 제> <삭 제> ③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이월결손금 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등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p>- 조특법 §74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p> <p>* [조특법 §74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④] 지방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과세 제외 ○ (예외) ①~④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④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⑤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 면초과금**</p> <p style="font-size: small;">*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p>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중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p> <p>○ (예외)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p> <p>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p> <p>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p> <p>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④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p> <p>○ (좌 동)</p> <p>- 3% 재평가적립금</p> <p>○ (좌 동)</p> <p>- 3% 재평가적립금</p> <p>⑤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p>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차익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input type="checkbox"/>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차익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 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input type="checkbox"/>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재평가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input type="checkbox"/>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p> <p>○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p>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인령 §72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p> <p>○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 주식보유 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⑤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 인건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p>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포함</p>

<개정이유> 사업주의 성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유도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p> <p>○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가맹사업법」</td> <td style="padding: 2px;">「신용정보법」</td> <td style="padding: 2px;">「개인정보 보호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제조물 책임법」</td> <td style="padding: 2px;">「공익신고자 보호법」</td> <td style="padding: 2px;">「파견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기간제법」</td> <td style="padding: 2px;">「하도급법」</td> <td style="padding: 2px;">「대리점법」</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추 가></p> <p>○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p>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p><input type="checkbox"/>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p> <p>○ (좌 동)</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남녀고용평등법」</td> <td style="padding: 2px;">「상표법」</td> <td style="padding: 2px;">「농수산물품질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식물신품종법」</td> <td style="padding: 2px;">「대규모유통업법」</td> <td style="padding: 2px;">「실용신안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상생협력법」</td> <td style="padding: 2px;">「자동차관리법」</td> <td style="padding: 2px;">「공정거래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중대재해처벌법」</td> <td style="padding: 2px;">「디자인보호법」</td> <td style="padding: 2px;">「축산계열화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부정경쟁방지법」</td> <td style="padding: 2px;">「특허법」</td> <td style="padding: 2px;">「산업기술보호법」</td> </tr> <tr> <td style="padding: 2px;">「환경보건법」</td> <td></td> <td></td> </tr> </table> <p>○ (좌 동)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1}{B}$ <p>A: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p> </div>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령 §6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p> <p>○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p> <p>-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대상법률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산업기술혁신촉진법」</p>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손익의 귀속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p>*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종 전	개 정
<p><신 설></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p><input type="checkbox"/>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p> <p>①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p> <p>=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div> <p>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p> <p>=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p> <p>*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p> <p>③ 결손금 공제·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p> <p>①의 금액 + ②의 금액</p>

<신 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①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②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조정 연결산출세액 ×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

<신 설>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법인령 §159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p> <p>○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p> <p>○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p><input type="checkbox"/>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p> <p>○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조세특례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조세특례 분야】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p><input type="checkbox"/>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방법* 규정</p> <p>*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3.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대상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p>○ 13개 분야* 258개 기술</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추 가></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p>○ 14개 분야 270개 기술</p> <p>- (분야) 방위산업 신설</p> <p>-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p> <p>▪ (신규) 15개</p> <p style="text-align: right;">신규 기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환경(3개)</td> <td>대형원전 제조기술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Non-coding 교시기술</td> </tr> <tr> <td>첨단소부장(5개)</td> <td>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td> </tr> <tr> <td>탄소중립(3개)</td> <td>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td> </tr> <tr> <td>방위산업(3개)</td> <td>추진체계 기술 등</td> </tr> </tbody> </table> <p>▪ (확대) 8개</p> <p style="text-align: right;">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미래형자동차(1개)</td> <td>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td> </tr> <tr> <td>바이오·헬스(2개)</td> <td>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td> </tr> <tr> <td>에너지·환경(2개)</td> <td>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td> </tr> <tr> <td>탄소중립(2개)</td> <td>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p> <p>○ 7개 분야 62개 기술*</p> <p>*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p> <p>○ 7개 분야 66개 기술</p> <p>-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p> <p>▪ (신규) 4개</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 기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디스플레이(1개)</td> <td>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3개)</td> <td>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td> </tr> <tr> <td></td> <td>수소환원제철 기술</td> </tr> <tr> <td></td> <td>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td> </tr> </tbody> </table> <p>▪ (확대) 1개</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1개)</td> <td>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법인세 분야】

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주식등 인수 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 ① 또는 ② 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p><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주식등이 출자총액의 50%(경영권 확보시 30%)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사업연도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좌 동) ○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③·§11의4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금액*) Ma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①, 조특령 §12③)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p> <p>○ (적용대상)</p> <p>① 창투자,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p> <p>② 창투자,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p> <p>③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p> <p>④ 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p> <p>○ (좌 동)</p>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2)

종 전	개 정
<p>□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❶~❷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❷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 (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❷를 통한 취득)출자가액의 5%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❸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좌 동) ❷ (좌 동) 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좌 동)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❸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p style="text-align: center;">*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p>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조특령 §12의2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 *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가 적용 되는 내국법인 제외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④ 기금운용법인등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추가 ①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100px; margin-left: 20px;"></div> ○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요건 규정(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p> <p>*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p> <p>○ 공제율</p> <p>- 대/중견/중소: 3/7/1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확대</p> <p>○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p> <p>-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p> <p>-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p> <p>*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시행령에서 규정)</p> <p><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 요건 규정 (①, ② 모두 충족)</p> <p>①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p> <p>②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p> <p>①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p> <p>②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p> <p>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p> <p>④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p> <p>*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p>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5.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7 신설, 조특령 §22의11)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제작사)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기준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공제율) 3% ○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의15·100의16·100의18, 조특령 §100의15·100의18)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p> <p>*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p> <p>○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예외 신설</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p> <p>*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p> <p>**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p> <p><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결손금 계산 방법 규정</p> <p>○ 하위 동업기업(자펀드)의 소득금액·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모펀드)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 ① × ② × ③</p> <p>*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②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p>

□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구분

-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으로 구분

<신 설>

□ 결손금 배분 제한

- (수동적 동업자) 배분 불가
-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신 설>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

<신 설>

□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결손금 구분 방법 규정

- (좌 동)
-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 따름

□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결손금 배분 제한 방법 규정

- (좌 동)
-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 가능

□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 배분방법 규정

- 상위 동업기업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32⑨)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 증가없음 : 임금증가액 ② 고용·임금 모두 증가 : 기존근로자 임금증가액* × 1.5 + 신규근로자 임금증가액** × 2 ③ 청년 및 당기 정규직 전환근로자 수 증가시 추가 공제 : 해당 임금증가액 × 2 (②, ③ 중복 산입 불가) ○ 상시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26의4) 규정 준용 ○ 임금증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 증가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정방식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조특령 §100의32④)

종 전	개 정
<p>□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미환류소득 : ㉠ 또는 ㉡를 선택하여 산정</p> <p>㉠ 투자포함방법 = [기업소득 × 70% - (투자액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출연금액 × 300%)]</p> <p>㉡ 투자제외방법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출연금액 × 300%)]</p> </div> <p>○ (기업소득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등</p> <p>○ (기업소득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p>□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합리화</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삭 제></p>

<개정이유>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및 세부사항 규정(조특법 §104의15, §127, 조특령 §104의15)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②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기한) '26.12.31. <p><input type="checkbox"/>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 대상 추가 <p style="margin-left: 20px;">] ○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①, ②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② 광구 개발·운영 목적 설립

○ (투자) 외국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투자

*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
 -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보유한 내국인

□ 추정세액 범위: ① + ②

① (세액공제액 상당액)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회수한 경우

: 세액공제액 × $\frac{\text{이전·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text{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세액공제액 전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¹ 추정대상 일수 × ² 이자율

* 1」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2」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5년 100% + 2년 50% ②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3년 100% + 2년 50% - 관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완전복귀: 5년 100% ②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적용기한) '24.12.31. 	<p><input type="checkbox"/> 감면 폭·기간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7년간 100%</u> + <u>3년간 50%</u> ② (좌 동) - (좌 동) ○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 ○ (좌 동)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신 설>

□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삭 제>

- * 법률로 상향입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조특령 §104의30)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현지법인으로서 해외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 ○ (적용요건) ①~④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이자 및 ②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 포함 ②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③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④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 * 누적 결손금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이거나, 순자산 평가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2024년</th> <th>2025년</th> <th>2026년</th> <th>~</th> <th>2033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0%</td> <td>20%</td> <td>30%</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한도 : 접대비 한도액의 20%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문화 업무추진비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구입비용 - 수목원·정원 입장권 구입비용 - 케이블카(궤도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개정이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여건 개선

<적용시기> '23.7.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입금액 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 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03%</td> </tr> </tbody> </table> ○ 추가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한도 확대</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 추가 한도 특례 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 제외 - (적용기한) '25.12.31. </p>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간주공급</p> <p>○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p> <p>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p> <p>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p> <p>③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p>	<p><input type="checkbox"/>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p> <p>○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p> <p>○ (좌 동)</p>

〈개정이유〉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2.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가산세)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권등록)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④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p style="font-size: small;">*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p>

<개정이유>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면세요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번호인의 국선번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면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이유>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부가령 §69⑬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p> <p>*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p> <p>○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 사유 추가</p> <p>○ (좌 동)</p> <p>○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등을 공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중개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 [</p>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거래증빙서류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8⑨, 부가령§15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채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u>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u> ④ (좌 동)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u>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u>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이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조세특례-부가가치세 분야】

1.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4¹²·§106의9¹² 신설, §106의9^① 개정)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비철금속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좌 동)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령 §109의2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호텔업 	<p><input type="checkbox"/> 환급 대상 호텔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 (범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분야

【소득세법 · 시행령】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소득령 §9, §9의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input type="checkbox"/>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 5,000만원 - 어업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법 §12(3)마, 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소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p>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3)며)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p> <p>○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p> <p>*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p> <p>○ 연 500만원 → 연 700만원</p> <p>-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p> <p>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p> <p>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p> <p>*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p> <p>**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p>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소득법 §25)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과세</p> <p>○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p> <p>*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p> <p>- (적용기한) '23.12.31.</p>	<p><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p> <p style="text-align: center;">2주택자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p> <p>* 기준시가 12억원 초과</p> <p>○ 적용기한 연장</p> <p style="text-align: center;">- '26.12.31.</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시행시기> (과세대상 확대)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소득령 §11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5%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p style="color: red;">*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법 §81의11, 소득법(제19196호, 2022.12.31.) 부칙 §1(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 2026.1.1. 이후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산업인력공단 직원

<개정이유>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p>*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p>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p><small>*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small></p>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20.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2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령 §80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p> <p>*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p><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개정이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령」 §39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 §16 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②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법 시행령」 §1의2①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2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②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좌 동)

〈개정 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p>*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p>*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p>①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p> <p>-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p> <p>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① 5만원 → 8만원</p> <p>- (좌 동)</p> <p>② (좌 동)</p> <p>-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p>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도) 연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7.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종 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 계산서 발급비율(%)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 (좌 동)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 <th>'19</th> <th>'20~'21</th> <th>'22~'2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도매인</td> <td>서울</td> <td>85</td> <td>90</td> <td>95</td> </tr> <tr> <td>서울 외</td> <td>65</td> <td>70</td> <td>75</td> </tr> <tr> <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 <td>85</td> <td>90</td> <td>95</td> </tr> </tbody> </table>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 <th>'19</th> <th>'20~'21</th> <th>'22~'23</th> <th>'24~'25</th> <th>'26</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도매인</td> <td>서울</td> <td>85</td> <td>90</td> <td colspan="3">95</td> </tr> <tr> <td>서울 외</td> <td>65</td> <td>70</td> <td>75</td> <td>80</td> <td>85</td> </tr> <tr> <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 <td>85</td> <td>90</td> <td colspan="3">95</td> </tr> </tbody> </table>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24~'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24~'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 적용기한 : '23.12.31.까지					○ '26.12.31.까지																																																			

<개정이유>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령 §157)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과세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 (좌 동) - 5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스닥	2%	
코넥스	4%		코넥스	4%	

〈개정이유〉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 추가 ></p>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 (좌 동)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33.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개정이유〉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p> <p>*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p> <p>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p> <p>* 전체 125개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의무발행대상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p> <p>*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외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블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서비스업</p> <p>**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p>

<개정이유>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분야

【양도소득세 분야】

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 · §95, 소득령 §152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 개념 구체화 (시설구조상 특성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padding-left: 20px;">-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p> <p style="padding-left: 20px;">*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p> <p><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p style="padding-left: 20px;">- 단,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① + ②)</p>

	<p>①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p> <p>* 최대 40% 적용</p> <p>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p>
--	--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① 또는 ② 또는 ③)</p> <p>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 + 나)</p> <p>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p> <p>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p>	<p><input type="checkbox"/>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p> <p style="margin-left: 20px;">] ○ (좌 동)</p> <p>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p> <p>가. (좌 동)</p> <p>나. 12개월간 정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p> <p>*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p>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명확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 · §159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p> <p>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p> <p>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p> <p>⇒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p> <p>*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p> <p>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p> <p>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p> <p>③ 최연장자</p>	<p><input type="checkbox"/> 판정기준 합리화</p> <p>○ (좌 동)</p> <p>⇒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p>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2)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개관규정 신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규정 중	구 분	계 산
(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양도세 개략적 이해 제고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p>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p><input type="checkbox"/>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형 신축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종합부동산세 분야】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부법 §9②)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 종부세 과세체계</p> <p>① 일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배제 <p>② 공공주택사업자 등*</p> <p>*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p><input type="checkbox"/>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p> <p>① (좌 동)</p> <p>②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p> <p>*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 주택 수 관계없이 0.5~2.7%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p>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23.4.18.)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확대

(종부령 §3, 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추가 ○ (좌 동) ○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단, 미분양된 날부터 2년 한정 ○ (좌 동) ○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하 같다) ○ 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① 또는 ②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 단, 비수익용*인 경우에 한정 * 부속토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해당 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

<개정이유> 투기목적 무관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3.9.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중부령 §4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 추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margin: 10px 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중부령 §4의3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주택 유형 추가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p>① 소형 신축주택*</p> * 1) 면적: 전용면적 60m ²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p>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p> * 1) 면적: 전용면적 85m ²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 수 제외 특례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중부령 §4의3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배제 주택 ○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input type="checkbox"/> 주택 수 제외 특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6~9.30. 세무서장에게 신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최초 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의무 없음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3.9.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본 누진세율 적용대상 구체화 및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 (종부령§4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적용 법인</p> <p>* 아래 법인 외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등 ○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등 ○ 임대주택 건설·공급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등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구성원 사용 또는 주거지원용 주택만 보유 ○ 종중 <p><input type="checkbox"/> 누진세율 적용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6~.9.30. 세무서장에게 신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법 99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등은 주택 수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최초 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의무 없음

<개정이유>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한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3.9.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중부세칙 §4의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 ①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②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 필요 서류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23.9.27.)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분야】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상증법 §53의2, 상증령 §46)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공제*</p> <p>*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혼인 증여재산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약혼자의 사망, 「민법」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산세 면제 범위

-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②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 × ① × ②

-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② 1일 10만분의 22(국기령§27의4)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신 설>

<신 설>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개정이유>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의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자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p><input type="checkbox"/> 업종유지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p>○ (좌 동)</p>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 · §41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p><input type="checkbox"/>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p> <p>○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p> <p>○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p> <p>*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p> <p>○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p>	<p><input type="checkbox"/>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p> <p>○ (좌 동)</p> <p>○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p> <p>*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p> <p>○ (좌 동)</p>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p> <p>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p> <p>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개선</p> <p>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p> <p>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p> <p>-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의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p>

<개정이유>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❷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❸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❹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❺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추 가> ○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❻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조령 §14)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 (적용대상)</p> <p>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p> <p>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p> <p>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좌 동)</p> <p>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p> <p>○ (좌 동)</p> <p>-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비율*] × 10%</p> <p>*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p> </div> <p>○ (좌 동)</p>

<개정이유> 벤처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조특령 §14)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확인서* 발급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 ○ 발급주체 - 벤처투자조합 관리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사 등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주체 확대 ○ (좌 동)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개정이유>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16의2, §16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p> <p>* ① (법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② (법 §18의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③ (법 §18의3)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p> <p>○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p> <p>*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p>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중으로 확대</p> <p>○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p>

〈개정이유〉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조특령 §16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p> <p>○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p> <p>○ (적용기한) '23.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p> <p>○ (좌 동)</p> <p>-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p> <p>*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p> <p>○ (좌 동)</p> <p>○ '28.12.31.</p>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12.31.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학원 ○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 8, 조특령 §43의8⑤)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년 → 2년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적용시기〉 (재투자기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9.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 <input type="checkbox"/>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① 폐업·해산 ② 가입자 사망 ③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④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추 가>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과세 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⑤~⑧의 사유가 추가될 예정 <input type="checkbox"/>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과세 ① ~ ④ (좌 동)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희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 12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4.6.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좌 동) - 연 3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③)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2.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li style="padding-left: 20px;">*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12.31.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p> <p>*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조특령 §82의5)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 (세율 및 적용기한)				<input type="checkbox"/>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 (좌 동)
소득발생기간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조특령 §93의4)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ISA 편입대상인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범위</p> <p>*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p> <p>**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ISA 편입 허용</p> <p>○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p> <p>-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ISA 편입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p> <p>-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ISA 편입 당해연도 매출액 (다음연도 3월에 확정)</p>	<p><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p> <p>○ (좌 동)</p> <p>-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p> <p>: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p> <p>: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p> <p>-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p> <p>: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p> <p>: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개정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대상 K-OTC 주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최소 가입기간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 19, 조특령 §93의5)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 (적립한도) 월 40만원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55만원('25.1.1.부터) ○ '26.12.31.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input type="checkbox"/> 최소 가입기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군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마련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5.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84의4, 조특령 §93의6)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p>* 누적 납입금액의 6%</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적용기한) '23.12.31.</p>	<p><input type="checkbox"/>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p> <p>*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 계좌 유지)에 가입 ②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③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p>○ '24.12.31.</p>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 ※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p><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 ▪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p> <p>* 의무가입기간(5년)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명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파산신고 등 ○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개정이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9.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1의24)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p>▪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p>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법 §91의24, 조특령 §93의10)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상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❷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확대(200→ 400만원) ❸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div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div> 	<p><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p>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1.1.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저축 등의 소득요건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

2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및 한도 ○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7,000만원 →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7,000만원) ○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조특령 §96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23. 근로장려금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의4, §100의5, §100의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양자녀, 중복신청, 홑벌이가구 판단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녀 중복 시 판단기준 적용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 ③총급여액 많은 자 → ④산정금액 많은 자 → ⑤직전에 수급 받은 자 ○ 장려금 중복신청, 홑벌이 가구 판단시 적용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총급여액 많은 자 → ③산정금액 많은 자 → ④직전에 수급 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위 순서로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여부 결정	<input type="checkbox"/> 판단 우선순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 ②총급여액 많은 자 → ③산정금액 많은 자 → ④직전에 수급 받은 자 ○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판단 적용순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총급여액 많은 자 → ②산정금액 많은 자 → ③직전에 수급 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위 순서로 결정하되,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

〈개정이유〉 중복신청 등 발생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input type="checkbox"/>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28·§100의29, 조특령 별표11의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홀별이·맞별이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홀별이 가구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홀별이·맞별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홀별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 맞별이 가구		- 맞별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6.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및 조특령 §104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 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간) '26.1.1. ~ '27.12.31.

〈개정이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에 따른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2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28.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23.12.31.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29.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0.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면제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1.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현 행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2. 기획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조특령 §116의38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자산의 범위(①+②+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사용권 (다만,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제외) ② 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③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 ④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입주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특구 이전기업 또는 특구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장관이 “입주예정기업”으로 확인한 중소·중견기업도 포함 - (채권투자)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발행일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중인 채권의 취득은 제외 - (주식투자) 입주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및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시 해당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

<개정이유> 기획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조특령 §117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3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td> <td>40%</td> </tr> <tr> <td>⑤ 대중교통</td> <td>4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 <td>30% (40%)</td> </tr> <tr> <td>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 <td>40% (50%)</td> </tr> <tr> <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제한도</th> <th rowspan="2">총급여</th> <th colspan="2">7천만원 초과</th> </tr>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 rowspan="3">추가공제한 도</td> <td>전통시장</td> <td rowspan="3">300만원</td> <td rowspan="2">2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 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23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4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 한도 : 100만원)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 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3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제외 금액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양도세 분야】

1.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특령 §63⑭ · §64⑪)

종 전	개 정
<p>□ 농지등을 농·어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이월과세 특례 적용 요건</p> <p>○ (소재지 거주)</p> <p>1)농지등 소재 시·군·구, 2)1)과 연결한 시·군·구, 3)농지등으로부터 30km 이내</p> <p>○ (자경기간) 4년 이상</p> <p>-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자경기간 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p> <p>- (좌 동)</p> <p>-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 기간은 제외</p> <p>*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업 등: 1.5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0.75억원</p>

〈개정이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❶ + ❷ + ❸ ❶ 농지소재지 거주 ❷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 (감면율) 100%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특령 §67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 ○ (요건) ① & ② &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 경작한 토지 ②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 ③ 종전·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 (감면율)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 (좌 동)

〈개정이유〉 양도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명확화

4. 경영희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경영희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p> <p>*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p> <p>○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p> <p>*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p> <p>○ (요건) ① + ② + ③</p> <p>①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p> <p>②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p> <p>③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p> <p><input type="checkbox"/> 경영희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 환매 시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등</p> <p>*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p> <p>○ (환급신청) 농업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 매매·환매계약서 사본 제출</p>	<p><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요건 확대</p> <p>○ (좌 동)</p> <p>-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p> <p>○ ① 요건 확대</p> <p>①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p> <p>○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p> <p>○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p>

- (자경기간) 환매한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임차·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특례* 적용

*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100% 감면

<추 가>

-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 적용

* 8년 이상 직접 축산 시 양도세 100% 감면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경영희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p> <p>*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p> <p>○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p> <p>○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등 명확화</p> <p>○ (좌 동)</p> <p>-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p> <p>*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p>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❶ + ❷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 (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10px 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❶ + ❷ + ❸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❸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과세특례) ❶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❷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조특령 §7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p> <p>*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p> <p>○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 + 이자상당액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매금지 위반 -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 <p>○ 대토보상과 현금보상(10% 감면)의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의 차액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등 - 해당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p>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토를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p> <p>○ (요건) ① + ②</p> <p>①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p> <p>②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p> <p>○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p> <p>①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p> <p>②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p> <p>○ (적용기한) '23.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6.12.31.</p>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9.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p> <p>○ (대상 농어촌주택) ①&②&③</p> <p>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p> <p>*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p> <p>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p> <p>③ '03.8월~'25.12월간 취득</p> <p>○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p> <p>○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p> <p>① '기회발전특구' 포함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p> <p>○ (좌 동)</p>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4, 조특령 §116의37)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p> <p>*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p> <p>○ (요건) ① & ② & ③</p> <p>①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p> <p>②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p> <p>*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p> <p>③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p> <p>* ①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p> <p>②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p> <p>○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p> <p>- 과세이연 대상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p> $\text{양도차익상당액} = \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특구내사업용부동산취득가액}}{\text{수도권사업용부동산양도가액}}$ <p>* 단,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p>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p> <p>*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p> <p>○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p> <p>*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합리화</p> <p>○ (좌 동)</p> <p>-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p> <p>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p> <p>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p>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상증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 5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 15년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30의6·§71, 조특령§27의6·§68)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input type="checkbox"/> 벌금형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인해 받은 벌금형 ○ 회계부정의 경우: 이사 등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받은 벌금형* <p style="margin-left: 40px;">*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역형·벌금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4 국제조세 / 이전가격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반】

1.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국조법 §16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 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 분부터 적용

2.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p> <p>○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p> <p>※ 소득금액비율 = $\frac{A(\text{이자·배당소득})}{B(\text{전체 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p> <p>○ (좌 동)</p> <p>-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 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p> <p>*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p>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관련 용어·범위 조정(국조법 §36⑥, 국조령§75)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금융회사등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정기 금융거래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금융정보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용어·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회사등 ○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험회사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사, 신기술사 - 추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단체 <p><input type="checkbox"/> 용어·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등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4.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51의2 신설)

현 행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p> <p>○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합의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p><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p>*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p> <p>①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p> <p>*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p> <p>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p>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국조령 §97, §9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p>*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법 §56 ①)</p>	<p><input type="checkbox"/>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p>*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법 §59①)</p>	<p><input type="checkbox"/>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p> <p>*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p> <p>①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p> <p>②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p> <p>*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p> <p><input type="checkbox"/>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 가액* 등</p> <p>*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p> <p><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p>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②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 <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구체화</p> <p>*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p> <p>○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③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p> <p><input type="checkbox"/> 해외신탁재산 가액</p> <p>① 원칙 : 시가</p> <p>- 현금·상장주식·상장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산 : 시가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p> <p>* 1)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일</p> <p>- 그 외 해외신탁재산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액</p> <p>②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p> <p>*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p> <p>○ 취득자금출처 미소명·거짓소명금액의 20%</p>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최저한세】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제 부과제척기간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대상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범위 ○ 법인 <단서 신설> ○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그룹의 정의 ○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현 행	개 정
<p>□ 고정사업장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p>□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②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③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④ 위의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11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배지분의 정의 ○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지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지배지분 정의의 명확화 ○ (좌 동) ○ 국부펀드*가 소유한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 국제수지 균형, 재정수요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정부가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개정이유> 지배지분 범위의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③ 신설)

< 법 개정('22.12) 내용(§62②)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제외기업의 범위</p> <p>* 제외기업 범위(§62의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p style="text-align: right;"> } 당연제외 } 임의제외 </p> <p>○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p> <p>○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7②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의 순손익</p> <p>○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시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p> <p>○ (원칙) 좌 동</p> <p>○ (특례) 고정사업장 결손이 다음 ①·②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포함</p> <p>①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될 것</p> <p>② 본점 및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을 것</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③·④ 신설 및 국조령 §116의2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p> <p>○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p> <p>○ (좌 동)</p> <p>○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p> <p>*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p> <p>①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p> <p>②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2 및 국조령 §120②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p>□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①~③ 모두에 해당)</p> <p>①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아래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p> <p>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최종모기업 회계 기준 또는 인정회계기준이거나 공인회계기준</p> <p>②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공인회계기구가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회계계정이 해당국가의 회사법 등에 의해 작성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p>②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가 아래 요건(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p> <p>①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p> <p>②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인정</p> <p>③ 최소적용제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규정</p> <p>④ 세율을 최저한세율(15%)보다 높게 규정</p> <p>③ (관리요건) ①·②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국조법 §73④산식 및 국조령 §125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②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 §73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p> <p>* 추가세액의 총액은 ①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②기업별로 배분</p> <p>①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p> $\text{배분비율} = 50\% \times \frac{\text{해당 국가의 종업원수}}{\text{모든 국가의 종업원수}} + 50\% \times \frac{\text{해당 국가의 유형자산}}{\text{모든 국가의 유형자산}}$ <p>* 모든국가: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p> <p>②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p> $\text{배분비율} = 50\% \times \frac{\text{해당 기업의 종업원수}}{\text{모든 기업의 종업원수}} + 50\% \times \frac{\text{해당 기업의 유형자산}}{\text{모든 기업의 유형자산}}$ <p>* 모든기업: 추가세액 배분받은 국가내 기업</p>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p> <p>① (좌 동)</p> <p>② ①·② 중 선택</p> <p>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p> <p>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p>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⑥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p> <p>○ (배분) 소득산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p> <p>-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p>

<개정이유>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 §129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조직재편 처리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적용 내용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차액은 ①,② 중 하나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차액 전부를 조정시점의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 시점과 이후 4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p> <p>*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p> <p>○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①개별 계산*, ②투시과세처리**, ③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p> <p>*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p> <p>**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p> <p>***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p>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국조법 §79⑤·⑥ 및 국조령 §136① 신설, §137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 아래 ① 또는 ② 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경우 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경우 <p><input type="checkbox"/>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p> <p>*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p> <p style="margin-left: 20px;">○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p>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p><small>*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small></p>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①3 신설 및 국조령§144③ 신설)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p> <p>*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p> <p>○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p> <p>*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②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③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④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⑤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1 개요

◇ 기업의 국가별 이익에 대해 전세계 공통의 최저한세율 적용

[추가세액의 계산]

-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회사의 연결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
 - * 단일국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그룹은 미적용
 - ** '24년의 적용여부 판단은 '20년, '21년, '22년, '23년의 연결매출액으로 판단
- 최저한세율: 15%(국가별 적용)
- 국가별 추가세액: $(\text{회계상 순손익} \pm \text{조정} - \text{실질기반제외소득}^*) \times (15\% - \text{실효세율})$
 - * 종업원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
 - 실효세율: $(\text{회계상 법인세비용} \pm \text{조정}) \div (\text{회계상 순손익} \pm \text{조정})$
- 기업별 추가세액: '회계상 순손익±조정' 금액의 비율로 배분

[추가세액의 과세]

- 글로벌최저한세는 3가지 과세규칙*에 따라 과세
 - * IIR은 '24년 시행, UTPR은 '25년 시행예정이며, QDMTT는 시행 미정
 - 소득산입규칙(IIR): 자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로 과세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각 국가에서 과세
 - * 모회사가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지국이 IIR 미도입
 - 소재국추가세(QDMTT): 추가세액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 * 추가세액을 QDMTT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과세권이 IIR·UTPR 시행국가로 이전되지 않음

2 추가세액 계산구조 등(국조법 개정 주요내용)

◇ ①적용여부 판단 → ②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③조정대상조세 계산 → ④실효세율(③÷②) 및 추가세액 계산 → ⑤추가세액배분액 계산 [※⑥특례 및 ⑦신고납부]

[① 적용여부 판단]

①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 파악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62①)

② 구성기업 파악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의 기본단위로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 제표에 포함된 모든 법인과 고정사업장, 신탁 등 포함(§61①9)

③ 제외기업 배제

- ①정부기업, ②국제기구, ③비영리기구, ④연금펀드, 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규칙적용 배제(구성기업 아님)(§62③)

④ 각 구성기업의 소재지 파악(§64)

- 기본적으로 납세지 국가 또는 설립·등록된 국가에 소재
- 투과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거나 IIR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설립·등록된 국가에 소재
 - 상기 외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간주(무국적)
-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
 - 법인세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 상기 외의 경우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간주(무국적)

[2]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① 회계상 순손익 결정(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의 기산점)

- 회계상 순손익은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기록된 당기순손익(§61①13)

*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 반영 전 재무제표

② 회계상 순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조정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일종의 세무조정)(§66①)

* 법인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등

- 국제해운소득(적격부수소득* 포함)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66③)

* 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나용선·컨테이너 임대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으로, 국제해운소득의 50%를 한도로 국제해운소득에 포함

③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고정사업장) 조세조약·세법 등에 따라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본점과 구분)(§66④)

- (투과기업*) 사업이 수행된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회계상 순손익을 배분(§66⑥)

* 기업소득을 주주소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과세(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음)

- 다만, 투과기업이 투시과세되는 최종모기업이거나,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③ 조정대상조세 계산]

① 조정대상조세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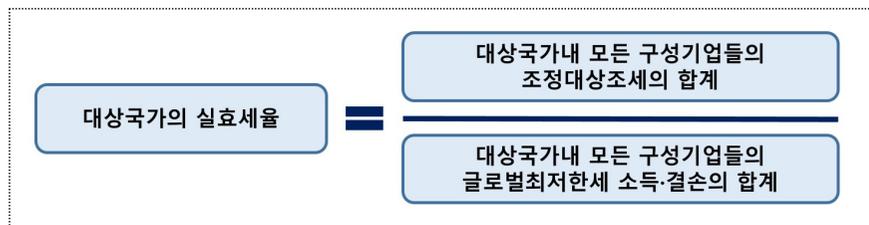
-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67①)
 - *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반영 등
 - 일시적 차이·전기 결손금 관련 회계상 인식한 이연법인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출(\$67②)
 - * 법인세 세율의 변동 및 과세소득 전망 조정 등에 따른 재계산,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산된 금액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 등

② 신고 후 조정(\$68)

- 세무조사·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변동(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
 - (증가)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 * 대상조세의 감소가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당기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가능
 -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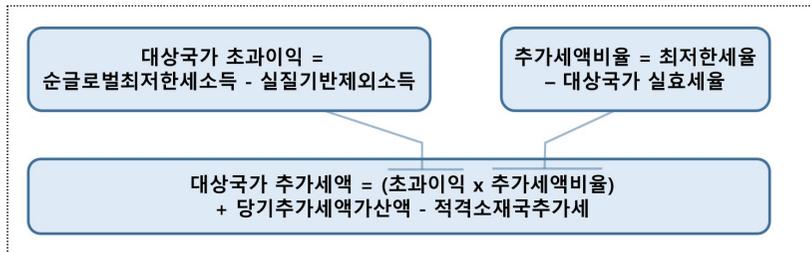
[④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①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등(\$69)



- ① 대상국가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② 대상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시, 최저한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추가세액비율 계산

2 저율과세 국가의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70)



① 대상국가 초과이익*에 추가세액비율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종업원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차감하여 산출

② 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대상국가의 추가세액 결정

* 이전 사업연도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의 금액

3 저율과세 구성기업 간 추가세액 분배(\$71)



- 저율과세국가의 추가세액은 대상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비율로 분배

[⑤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①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모기업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 세액을 우선적으로 배분(\$72③)

< 예시 ①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 - 10\%) \times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 - 40) \div 100 = 60\%$
 \therefore 기업A는 $5 \times 60\% = 3$ 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 (하향식 접근)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차상위 중간모기업에 추가세액을 배분(\$72④)

< 예시 ② >

① 기업C 추가세액 = 5
 ②-1 A국·B국 모두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경우
 \therefore 기업A가 5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②-2 A국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B국은 적용한 경우
 \therefore 기업B가 5만큼 B국 과세당국에 납부

- (예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분을 소유 시, 해당 추가세액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배분(\$72⑤)

* 다국적기업그룹외의 제3자가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중간모기업

< 예시 ③ >

① 기업C 추가세액 = 5
 ② A국과 B국은 모두 소득산입규칙 적용
 ③ 기업B는 제3자가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therefore A국은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B국이 적용하여 기업B가 5만큼 B국 과세당국에 납부

② 모기업이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 규모 결정

- 모기업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추가세액배분액)을 배분(예시1 참고)(§72②)
 -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모기업이 아닌 다른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추가세액이 여러 모기업에 배분되는 경우 상위 모기업에 배분된 금액에서 중간모기업에 배분된 금액을 차감(§72⑧)

< 예시④ >

① 기업C 추가세액 = 10
 ② A국과 B국은 모두 소득산입규칙 적용
 ③ A 소득산입비율로 산정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B가 부담한 추가세액 중 A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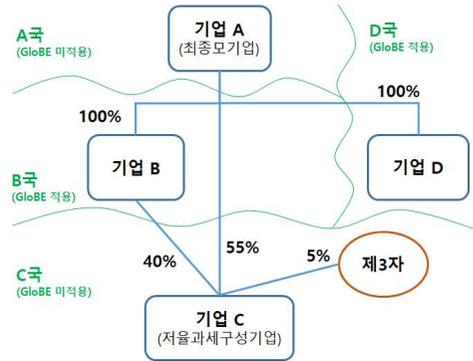
구분	기업A	기업B
직접 소유지분	50%	50%
간접 소유지분	30% (=60%×50%)	-
소득산입비율	80%	50%
추가세액배분액	8	5
중복적용 제외	△3*	-
최종 추가세액 배분액	5	5

* 3 = 5¹⁾ × 60%²⁾
 1) 기업B 추가세액 배분액
 2) 기업B에 대한 기업A의 소득산입비율

③ 잔여 추가세액이 있다면,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 * 소득산입규칙의 '보완장치(backstop)'로서 기능
-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각 국가에서 과세(§73①~③)
 - * 모회사가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지국이 IIR 미도입

< 예시⑤ >



- ① 기업C 추가세액 = 10
- ② A는 소득납입규칙 미적용, B는 소득납입규칙에 따라 4* 부담
* 4 = 10(C기업 추가세액) × 40%(B기업 소득납입비율)
- ③ A의 소유지분비율은 95%(직접 55%, 간접 40%)이므로, 최종모기업의 모든 소유지분에 대해 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았음
→ 이 경우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총 추가세액 10에서 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된 추가세액 4를 차감한 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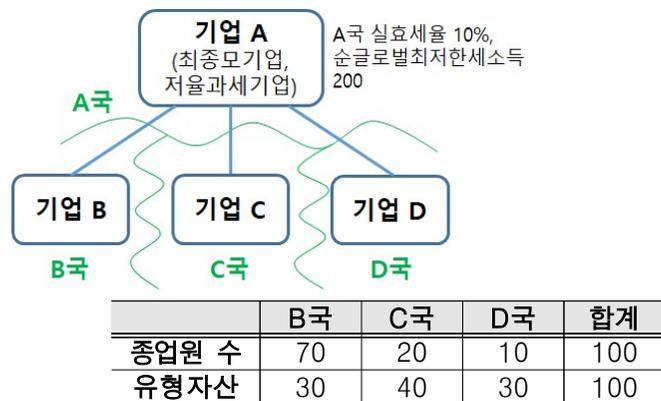
④ 각 국가별 소득납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결정

○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국가에 배분

- 해당 국가는 '배분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만큼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73④)

$$\text{배분비율} = 50\% \times \frac{\text{해당 관할국 종업원수}}{\text{모든 관할국 종업원수}} + 50\% \times \frac{\text{해당 관할국 유형자산}}{\text{모든 관할국 유형자산}}$$

< 예시⑥ >



-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 ③ 배분비율
 - ▶ B국 = 50%×0.7 + 50%×0.3 = 50%
 - ▶ C국 = 50%×0.2 + 50%×0.4 = 30%
 - ▶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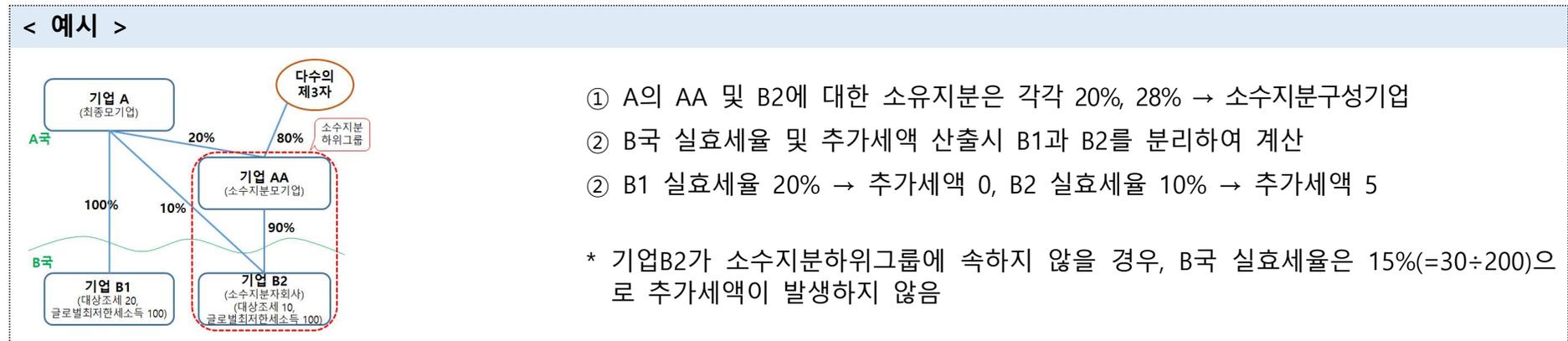
[6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 (§74)

- 최근 3년 간 ①평균 매출액이 1천만 유로미만이고, ②평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결손 또는 1백만 유로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0으로 간주

②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75)

- 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지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들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③ 조직재편 (§76) 및 공동기업 (§77①) 처리

- (조직재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 시 ①처분기업은 처분 손익을 포함하고, ②취득기업은 취득기업의 장부가액 적용

- 조직재편에 따른 자산·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서 제외, ②취득기업은 처분기업의 장부가액 적용

※ 우리 법인세법 상 합병·분할(적격·비적격) 세제와 일치

- (공동기업)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율이 50%이상으로 지분법 적용기업은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회계기준 상 공동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아 구성기업에 미해당

④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 계산(§79)

○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이 가능

- 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며,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만 고려하여 계산**(제3자 지분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 기업을 **투시과세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4년 내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로 과세**

⑤ 적용면제(§80)

○ 전환기* 동안 국가별보고서를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 (소액 요건) 매출액과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 (간이실효세율 요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사연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

-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⑥ 시행 초기 경과규정 등(§81, §82)

○ 최초적용연도*의 실효세율 계산 시,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고려하여 계산**

*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범위에 드는 첫 번째 사업연도

** 회계상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전 연도 발생분에 대한 계산부담 최소화

○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 ②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5천만 유로 이하

※ 이 외 투과기업인 최종모회사, 적격분배세제, 복수모기업다국적그룹 등 해외 세제 관련 처리방안도 본 장에 포함

[7 신고납부]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제출 (§83)

- (신고주체) 개별 구성기업이 제출함이 원칙이나, 다른 구성 기업이 그 그룹을 대표하여 제출 시* 개별 기업은 의무 면제

* 다국적기업그룹의 ①최종모기업 또는 ②그룹이 지정한 구성기업이 정보 교환협정이 있는 국가에 제출

- 국외구성기업이 그 그룹을 대표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국외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적용 첫해는 18개월)

- (서식) 글로벌공통서식*

* 납세자, 그룹 지배구조,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 등 포함

-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적용 첫해는 18개월)

* (예) '24.1.1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의 경우 '24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6.6.30까지 신고, '25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7.3.31까지 신고

- (과태료) ①신고서 미제출 또는 ②이를 대신 제출하는 국외 구성기업 관련사항을 미신고시 과태료 1억원 부과

- 다만,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면제

* ①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②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③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④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⑤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2]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84)

- IIR·UTPR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해야하는 구성기업은 별도의 추가세액 신고·납부 절차 적용
- 신고·납부기한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15개월)과 동일하며,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3] 결정·경정·수시부과·통지·징수 (§85)

- 법인세법 (§66, §69, §70, §71) 준용하여 규정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p> <p>○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p> <p>-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p><input type="checkbox"/>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p> <p>○ (좌 동)</p> <p>-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p>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56의9 신설, 법인법 §98의8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4②, 6④, 법인법 §98의4⑤, 5②, 6④)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4.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p> <p><input type="checkbox"/>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p> <p>○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p> <p>- ①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①(1)</p> <p>- ②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②(1), (2)</p> <p>○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정의</p> <p>-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또는 주식기준보상*</p> <p>* ①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②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p> <p><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p> <p>* 주식매수선택권등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p> <p><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p>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등 소득과약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